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5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김한규·손명수・박상혁

이건태 · 장철민 · 박희승

유준병 • 백혜련 • 박홍배

김태년 • 양부남 • 진선미

민병덕 · 문대림 · 서미화

문정복 · 강훈식 · 김원이

강선우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 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 술보호 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진단"을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	및 자문 등) ①		
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2		
기술보호 <u>진단</u>	<u>진단 및 수준별 기</u>		
	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		
	<u>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u><신 설></u>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		
	<u>굴 및 확산</u>		
<u>6.</u> (생 략)	<u>8.</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